

제273회 고령군의회 정례회
제 3차 본회의, 2021.12.08(수)10:00

고령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·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전 문 위 원

「고령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·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」 검토보고

1. 제안자 : 고령군수

2. 제안이유

- 「지방자치법」 제20조('22.1.13. 시행)에서 주민에서 규칙의 제정과 개정·폐지에 관련된 의견 제출권을 부여하고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군민들이 규칙 제·개정 등에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조례 제정의 목적(안 제1조)
- 나. 군수의 책무(안 제2조)
- 다. 의견제출 방법 및 보완요구 등에 관한 사항(안 제5조 ~ 제8조)
- 라. 차별대우 금지에 관한 사항(안 제9조)

4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20조 및 제29조

5. 검토의견

○ 본 제정조례안은,

- 「지방자치법」 제20조 규칙의 제정과 개정·폐지의 의견제출이 ‘22. 1. 13 시행됨에 따라 군민들이 규칙에 개정 등에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.

○ 검토결과,

- 안 제2조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, 안 제4조 의견제출 제외 대상에 관한 사항 안 제5조, 제6조, 제7조의 의견제출 방법 및 보안요구 등에 대한 규정은 『지방자치법』 등 상위법령에 위배가 없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.
-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